정신건강돌봄(우울증 · 고독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돌봄(우울증 · 고독사)]

우울증, 도움이 필요한가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가요? 이 콘텐츠에서 는 정신건강(우울증 및 고독사)과 관련하여 개념 및 지원 정책(상담 및 치료비 등)을 법령과 연계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돌봄(우울증 · 고독사) 1
1. 우울증, 도움받을 수 있나요? 4
1.1. 정신건강 살펴보기 4
1.1.1. 우울증 증상일까요? 4
1.2. 마음을 이야기해요. 6
1.2.1. 정신건강 상담하기 6
2. 우울증 치료를 응원합니다. 9
2.1. 정신건강(우울증 등) 치료비 지원 서비스 9
2.1.1. 우울증,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9
2.1.2. 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13
3.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17
3.1. 고독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7
3.1.1. 고독사·독거사·무연고사 등 17
3.2.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18
3.2.1.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18
3.2.2. 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

1. 우울증, 도움받을 수 있나요?

1.1. 정신건강 살펴보기

1.1.1. 우울증 증상일까요?

다음의 증상이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세요.

우울증(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일 경우 겪는 증상

▪ “우울증”이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국가정신건강포털(www.mentalhealth.go.kr)-정신건강정보-질환별 정보-개요 참조].

▪ 우울증은 개인의 잘못이나 약점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간다고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우울증을 진단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국가정신건강포털 (www.mentalhealth.go.kr) -정신건강정보-질환별 정보-진단 참조].

우울증 의심 증상
•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또는 절망감 •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 • 취미 또는 스포츠와 같은 대부분 또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성인의 경우 성생활을 포함)에 관한 관심 또는 즐거움 상실 •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 식욕이 줄어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식욕이 늘어 체중이 늘기도 함 • 불안, 안절부절못함 • 생각, 말하기, 신체 움직임이 느려짐 •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의 실패나 자책에 빠짐 •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죽음,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자살에 대한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생각 • 병원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는 허리 통증이나 두통과 같은 지속하는 통증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을 이용하시면 온라인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며, 우울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이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132쪽 참조).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 위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 명에서 2021년 93만 명으로 5년 동안 약 35.1% 증가(5년간 연평균 7.8% 증가) 하였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22. 6. 24.)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참조].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참조).

▪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은 우울증(정신건강)을 검사하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모아-나의 건강-건강검진 실시안내 참조]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하시면 **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실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에 다양한 건강검진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1인가구 지원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시 관리를 위함)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참조).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https://www.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마음을 이야기해요.

1.2.1. 정신건강 상담하기

※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치료비 등)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국가 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연계

▪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참조).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우울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서비스(치료비, 사례관리 등)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정신건강재단 해피마인드 홈페이지(https://www.mind44.co.kr/index.php)-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우울증 전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 보건소 정보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를 이용하시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례]

1. 서울특별시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검진 지원>

- 마음건강검진은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정신건강의학과 초진(해당 의료기관 1년 동안 미방문자)에 해당하는 경우]할 수 있습니다.
-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3회차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및 상담 시 발생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약제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건강상담 지원>

- 마음건강상담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은 최대 7회기(1회기 50분)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지원>

- 퇴원을 준비하는 중증정신질환자(반복성 우울증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에서 외래치료로의 전환에 따른 치료 연속성 확보와 퇴원 후 초기 적응을 위한 단기 집중 사례관리(개별화된 개입 계획에 따라 상담, 투약관리 및 외래동행, 정신건강교육, 가족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을 제공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특별시 블루터치 홈페이지(blutouch.net)-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참조>

마음이 힘들 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담기관 및 연락처
우울감 등 정신과적 상담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 ☎109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상담 ☎1577-0199
학생 청소년 정신과적 상담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1661-5004: 다들어줄개-카카오톡/페이스북/문자)
경제·법률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취업 지원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 지원 상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청년 심층(전문) 상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nct.go.kr)를 이용하시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울증 치료를 응원합니다.

2.1. 정신건강(우울증 등) 치료비 지원 서비스

2.1.1. 우울증,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 ※ 우울증 치료비 지원 내용은 지역별 예산 규모 및 소진 시기가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참조).

▪ 조기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 위의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참조).

> ※ 그 밖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지원되는 치료비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 따라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33면 참조).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 따라서 응급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하여 지원되는 비용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면 참조).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 따라서 행정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해 행정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7면 참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참조).

▪ 따라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0면 참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이용 시)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7면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우울증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지원 유형에 따라 대상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53면 참조).

유형	대상자 자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등록 필수. 다만,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 ‘응급입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은 불가합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면 이하 참조).

> ※ 우울증 치료비 지원 대상자별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8면 참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9면 참조).

▪ 치료비 지원 유형별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9면 참조).

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비	• 해당되는 진단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은 날부터 5년까지	지원 유형 모두 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은 최대 100만원 지원으로 제한됨
응급입원	입원비	• 연중 응급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행정입원	입원비	• 연중 행정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외래치료 지원	외래비	•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 기간 •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장소(보건소)

▪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면 참조).

> ※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g-health.kr)-보건소식-보건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치료비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7~8면 참조).

유형	신청기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응급입원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없이 신청 권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절차·구비서류·지원금액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자살시도자,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의 현황 및 발생 원인(동기)

▪ OECD 회원국 자살률에 대한 최신 연도 통계(2020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자살률의 평균보다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자살예방백서」, 130면 참조).

▪ 또한, 2020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 원인(동기)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남녀문제, 사별문제 순으로 많았습니다(「자살예방백서」, 98면 참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살시도자, 지원되는 치료비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비,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자살시도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적격심사를 통해 치료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안내-재단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지원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국비 및 민간기금(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안내」, 81면 및 83면부터 85면까지 참조).

1.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 지원 대상: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자살시도자 중 사후관리서비스 서면 동의 대상자

√ 지원 내용: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 약제비 등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응급실 내원일 기준, 6개월 간 치료비 지원(퇴원 및 외래진료 종료 1개월 이내 신청 권고)

2. 그 밖의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살시도자(청년층만 해당)

√ 지원 대상: 자해·자살시도로 인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15~34세 청년

※ 1992. 1. 1. ~ 2011. 12. 31. 출생자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한 사람

√ 지원 내용: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 등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원, 단기 사후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19면 참조).

> ※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6면 참조).
>
> 1.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에 사례관리팀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게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안내 후 동의 대상자에게 병원기반 단기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2. 지역사회 연계에 동의한 자살시도자를 병원 기반 단기 사후관리 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
> 3. 사례관리자는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매 회기마다 대상자의 현재 자살 위험도, 치료 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입 진행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 ※ 자살시도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자살예방센터)에서 지원(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 절차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 보건소 정보를 이용하시면 **전국 보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 체계

1. 보건복지부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관리·감독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3면 참조).

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효율적인 응급실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3면 참조).

3. 운영위원회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4면 참조).

4. 평가위원회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운영을 컨설팅하고 평가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4면 참조).

5.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팀으로 이루어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자살예방사업안내」, 74면 참조).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설치 현황>

(2025년 12월 기준: 전국 93개소)

서울 (23개소), 부산(4개소), 대구(3개소), 인천(8개소), 광주(2개소), 대전(3개소), 울산(1개소), 경기(16개소), 강원(4개소), 충북(3개소), 충남(6개소), 세종(1개소), 전북(5개소), 전남(2개소), 경북(6개소), 경남(4개소), 제주(2개소)

<출처: 「자살예방사업안내」, 188면 참조>

3.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3.1. 고독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1.1. 고독사·독거사·무연고사 등

고독사 관련 법령의 제정·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 생활관리(냄새 등)

▪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고독사 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유사 용어 이해하기

고독사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독거사

▪ "독거사"란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고립사

▪ "고립사"란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자살

▪ "자살"이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무연고사

▪ “무연고사”란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 ※ **고독사와 고립사의 구분**
>
> Q. 고독사와 고립사 모두 주변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고독사와 고립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A. ‘고독사’의 경우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인 반면에 ‘고립사’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3.2.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3.2.1.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고독사위험자의 개념

▪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후단 참조).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참조).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서울특별시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
>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

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참조>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고독사 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권고합니다.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참조).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상담 및 교육 방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참조).

상담 및 교육 내용

▪ 상담 및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2.2. 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 아래의 일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특화지원 서비스 포함)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제2항 참조).

▪ "특화지원 서비스"란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선정 기준에 부합한 65세 이상의 노인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화지원 서비스는 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확인된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9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개별상담, 치료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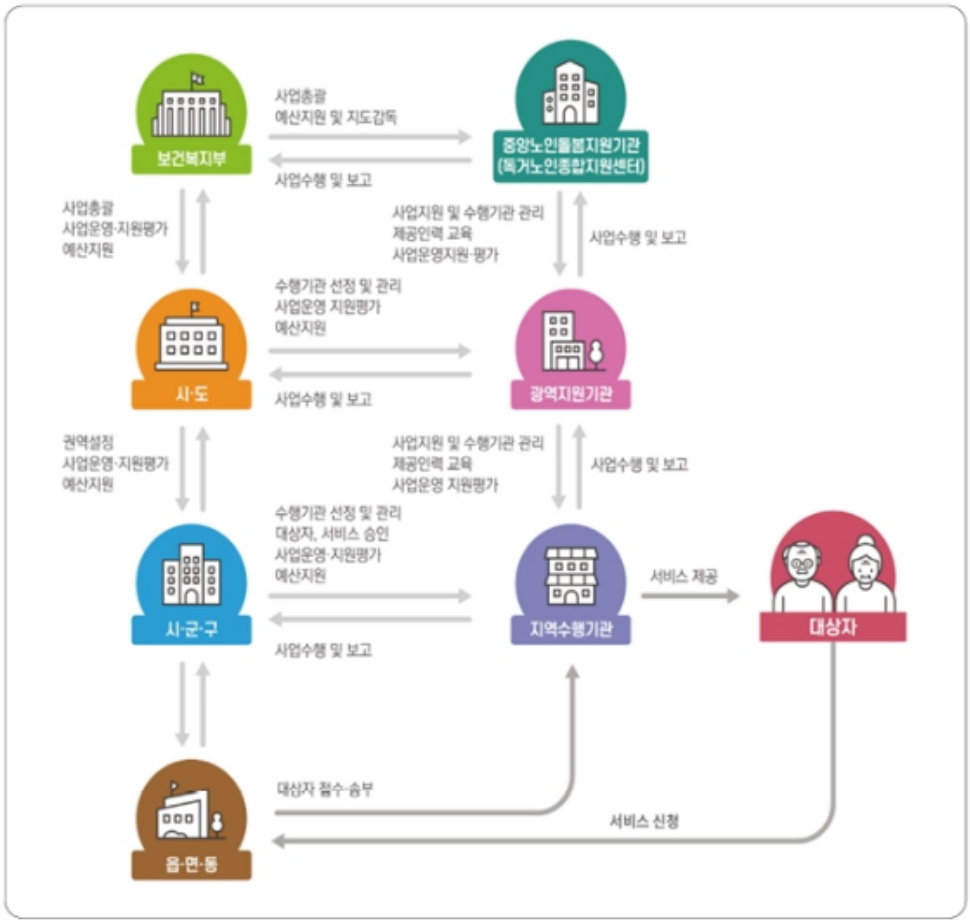
▪ 특화지원 서비스는 예방적 정서돌봄 체계 구축 및 고위험 통합사례관리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9쪽 참조).

서비스 영역		목표
중분류	소분류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상담·프로그램	• 정서적 위험 조기 발견 및 예방적 정돌봄을 통한 일상 기능과 자립생활 유지 지원 • 고위험군 맞춤형 위기개입 경로 관리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	•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충족 •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우울증 및 자살 위험 경감
	치료지원	• 정신과 진료 지원(우울증 진단), 약물치료 및 투약 관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지원 서비스 포함) 제공 체계

• 시·군·구에서는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 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지원 서비스 포함)을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 수행기관에서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채용 및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0쪽 참조>

※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